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	
		배포일시	2021. 10. 27.(수) / 총 6매(본문5, 참고1)	
담당 부서	규제개혁 법무담당관	담 당 자	• 과장 양종호, 사무관 문채빈, 주무관 김정태, 허동혁 • ☎ (044) 201-3224, 4816, 4817, 4818	
보 도 일 시		2021년 10월 28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0. 27.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건설기계 번호판의 지역 표기를 없애 등록관청 변경에 따른 재발급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

-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에서 규제개선 과제 17건 확정 -

-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10월 22일 경제단체, 법률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(위원장: 1차관)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를 심의·의결하였다고 밝혔다.
- 이번 심의회는 경제단체·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하였으며, ①민생편의 증진, ②중소 업계·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, ③행정절차 합리화 등을 위해 총 17건의 규제개선을 확정하였다.
- 이날 규제혁신심의회에서 확정된 주요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.

1. 민생편의 증진

① 건설기계 등록번호판 지역표기 삭제

*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(건설산업과, '21.10)

- (현황) 건설기계 번호판은 등록관청(시·도)·용도 등을 함께 표시하고 있어, 관할 시·도 외로 주소가 변경될 경우 등록관청 변경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.

* 자동차는 사용본거지 관할 시·도 외 다른 시·도에서 등록사무 처리 가능

- (개선) 지역명 표기를 없앤 전국번호판을 도입하고, 시·도 간 주소 변경 시 요구되는 번호판 재발급 의무를 없애 건설기계 소유자의 편의를 증진하도록 한다.

<건설기계 등록번호판 개선>

영업용		자가용 · 관용	
영세종 01가 5001 ⇒ 012가 4568		세종 01가 1001 ⇒ 012가 4568	

2 체육공원 내 국제경기장을 활용한 공익목적 시설 설치

*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개정(녹색도시과, '21.12)

- (현황) 100만㎡ 이상 체육공원의 국제경기장 내 설치허용시설이 대형마트·쇼핑센터 등 편익시설로 제한*되어 있어 국제경기 종료 후 경기장 활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.

* 국제경기 대회 성공적 개최, 시설 유지 및 이용자 편의 제공 등 목적으로 대형마트, 쇼핑센터 등의 편익시설 설치만 허용 중

- (개선) 공원시설에 '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국제경기장 관련 공익 목적 시설*'을 추가하여 각 지자체 사정에 맞게 국제경기장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.(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)

* (예시) 시청자미디어센터(IT교육 등 방통위 운영시설), 드론정비시설 등

3 산단형 행복주택의 기업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

*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(공공주택정책과, '21.12)

- (현황) 산단형 행복주택을 산단에 입주한 기업·교육기관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, 공실이 발생하더라도 소득·자산요건 등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없어 산단형 행복주택 공급에 어려움이 있었다.

* 산단형 행복주택을 근로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실 발생 시 입주자격 완화 가능(월평균 소득 100%→150%, 타 지역에 위치한 주택소유자 포함)

- (개선) 산단에 입주한 기업·교육기관 등에 공급한 행복주택도 근로자에게 직접 공급한 경우와 동일하게 공실 발생 시 소득·자산 요건 등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.

2. 경영환경 개선

4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의 파산 등 통보 의무 부담 완화

*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개정(부동산산업과, '21.11)

- (현황) 우수부동산서비스 인증사업*에 참여 중인 사업자가 파산 또는 해산하는 경우 등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했다.

* 우수한 품질의 부동산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와 연계하여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정부 인증제도

- (개선) 인증사업자의 통보의무를 삭제하고, 정기 또는 수시 점검*을 통해 자료 확인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한다.

* 인증 우수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2년 주기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, 인증기준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점검 가능(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 제15조 제3항)

5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차고지 입지규제 완화

*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(녹색도시과, '21.12)

- (현황) GB 내 택시차고지는 지자체장(시·도시자, 시·군·구청장)이 설치하는 공영차고지만 허용하여, 택시사업자가 운영하는 차고지의 경우에는 도시외곽 이전부지 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.

- (개선) GB의 보전·관리를 위하여 제한된 범위* 내에서 택시조합 또는 연합회가 설치하는 택시공동차고지의 GB 내 입지를 허용한다.

* 훼손된 지역이나 보전가치가 낮은 토지를 활용하고, 임야인 경우에는 생태·자연도 1·2등급지에는 설치를 제한하는 등 환경 보전

3. 행정절차 합리화

6 도시재생지역의 건폐율 규제 완화 절차 간소화

*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 개정(도시재생정책과, '22.6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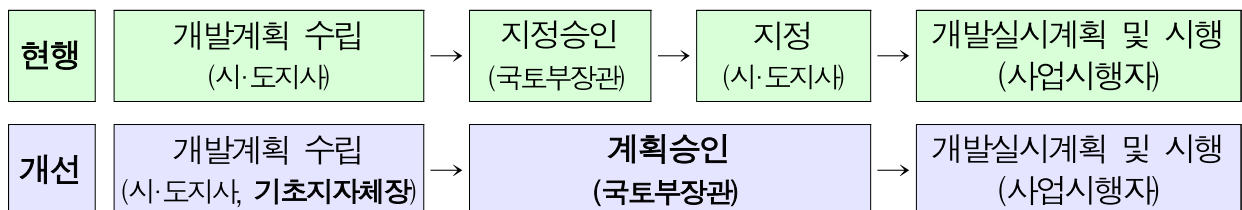
- (현황)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경우, 지자체 조례를 통해 국토계획법상 건폐율 최대한도 범위 내에서 건폐율 완화가 가능하며, 조례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지연이 불가피했다.
- (개선) 지자체 조례가 부재하더라도 국토계획법령상 건폐율 최대한도 범위 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7 복합환승센터 추진절차 간소화 및 개발계획 수립권자 확대

*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(광역환승시설과, '21.12)

- (현황) 광역복합환승센터의 경우 시·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국토부 장관이 지정승인, 다시 시·도지사가 이를 지정하도록 하여 기초지자체의 역할은 제약되고 행정절차가 지연되었다.
- (개선) 개발계획 수립권을 기초 지자체장까지 확대하고, 지정승인·지정 절차를 계획승인으로 통합하여 환승센터 구축을 활성화한다.

< 복합환승센터 추진절차 >



- 국토교통부 양종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“국토교통부는 △경제 활력 △생활편의 △미래대응 등 규제혁신에 집중할 3대 영역을

중심으로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도록 노력할 것”이라고 하면서

- “연초 수립한 「’21년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」에 따라 금년 중 ‘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재설계’ 및 ‘일상 속 드론상용화 지원을 통한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’ 등을 마련하여 신산업 육성 및 미래대응에도 주력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참고

주요 과제별 담당자

주요과제명	담당부서	담당자 (연락처)
① 건설기계 등록번호판 지역표기 삭제 (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, '21.10)	건설산업과	김광림 과장(3538) 박문신사무관(4588)
② 체육공원 내 국제경기장을 활용한 공익목적 시설 설치 (공원녹지법 시행규칙 개정, '21.12)	녹색도시과	신보미 과장(3742) 윤창훈사무관(3749)
③ 산단형 행복주택의 기업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(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, '21.12)	공공주택 정책과	이기봉과장(4539) 김민균사무관(4513)
④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의 파산 등 통보 의무 부담 완화 (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개정, '21.11)	부동산 산업과	한정희 과장(3411) 연규성사무관(3412)
⑤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차고지 입지규제 완화 (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, '21.12)	녹색도시과	신보미 과장(3742) 이정섭주무관(3746)
⑥ 도시재생지역의 건폐율 규제 완화 절차 간소화 (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, '22.6)	도시재생 정책과	황윤언 과장(4903) 박선영사무관(4904)
⑦ 복합환승센터 추진절차 간소화 및 개발계획 수립권자 확대 (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, '21.12)	광역환승 시설과	조민우 과장(5130) 양익준사무관(5134)